

2021년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」 참여 접수 시작

청년을 정보기술(IT) 직무에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오는 1월 8일(금) 오전 10:00부터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」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 -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」 사업은 정보기술(IT)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
 - '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.
 -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.
 - (지원대상·요건)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」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*인 중소·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.
 - * 벤처기업, 청년창업기업,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~4인도 가능
 -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*에 부합하는 정보기술(IT) 직무에 청년(만 15~34세)을 채용하고, 3개월 이상 근로계약(정규직 포함)·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**

 - I유형(콘텐츠 기획형): 홈페이지·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
 - II유형(빅데이터 활용형):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·기술 관련 직무
 - III유형(기록물 정보화형):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
 - IV유형(기타):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(IT) 직무
- (지원내용)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.

-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
월 지급 임금	인건비	간접노무비
200만 원 이상	180만 원	10만 원
200만 원 미만	지급 임금의 90%	10만 원

- (지원 절차)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.

* 사업 위탁 운영기관(붙임 참조), 일반문의(국번 없이 1350)

-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,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
-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“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,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고 말하며

- “「청년 디지털 일자리」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사무관(☎044-202-734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1.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(www.work.go.kr/youthjob)
- 기업의 참여 신청은 1.8.(금) 오전 10시부터 가능

2. 정보기술(IT)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정보기술(IT)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(IT)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
- 단, 소비·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
 - * 일반유희 주점업, 노래연습장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
3.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,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기를 권장함
- * '21년 총 5만명 지원, 예산 4,676억원

4.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?

- 만 15~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,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
- 다만, **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**(졸업예정자*는 가능), 취업 중인 자(고용보험 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등), 동일기업 재취업자(6개월 내)는 **지원대상에서 제외됨**
- * (졸업예정자) 고등학교 3학년 출석 일수 이수자,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 취업한 자, 대학교 졸업예정자

5.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?

□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수 이내, 최대 30명까지 가능함

* (예시)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
○ 단, 대형 정보기술(IT) 프로젝트 수행,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

* 채용 필요성, 직무 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,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

6.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?

□ 기업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,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

○ 단, 청년의 채용일은 '21.1.1.부터 '21.12.31. 이내여야 함

7. '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·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'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□ 참여 요건 충족 시 '21년 사업 참여 가능

○ 단, '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·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 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

8.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○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 받을 수 있음

※ 기타 세부 내용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